

#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728
------------	------

2021. 09. 0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 2. 제안이유

가.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에 공동협력하고자 서울시·의정부시·  
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2020. 3. 13.)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본 협약에는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의정부시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  
하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의정부시 및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 약 명: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 협약당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시
- 목     적: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20. 3. 13.)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지원에 대해 필요사항을 정함.
- 협력사업 개요
  - 1) 도봉면허시험장(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이전
    - 이 전 지: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0,425 $m^2$ )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20. 3. ~ '28년(예정)
  - 2)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 내     용: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지원
    - 조성대상: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 등 서울시·노원구와 합의하여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사업
  - 3) 장암역환승주차장 매각
    - 대 상 지: 장암역 환승주차장(의정부시 장암동 159번지 일대)
    - 매각대상: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장암동 159, 164-1)
    - 내     용: 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매각(서울시→의정부시)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 4)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 상호 협력
- 협약기간: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 발생

## 4. 검토의견

### □ 동의안 제출배경

- 이 동의안은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본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제1항<sup>1)</sup>에 따라 본 협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2021년 8월 25일 제출하여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도봉면허시험장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부지를 연결한 창동차량기지<sup>2)</sup>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의 이전이 필수적인 바,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을 위해 ‘20년 3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sup>3)</sup>하였고 이의 실행을 위해 ‘20년 4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본 협약안을 작성하게 됨.

구 분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대상지
위 치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면 적	67,420㎡(20,430평)	60,500㎡(18,340평)
토지소유현황	경찰청(73%), 서울시(18%), 노원구(9%)	사유지(81.9%), 국유지(17.5%), 사유지(0.6%)
도 시 계 획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1)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2) 창동차량기지(179,578㎡)는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2024년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임.
- 3) 기본협약 체결 후 제293회 임시회(‘20.4.29)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음.

구 분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대상지
현 황 사 진		

## □ 본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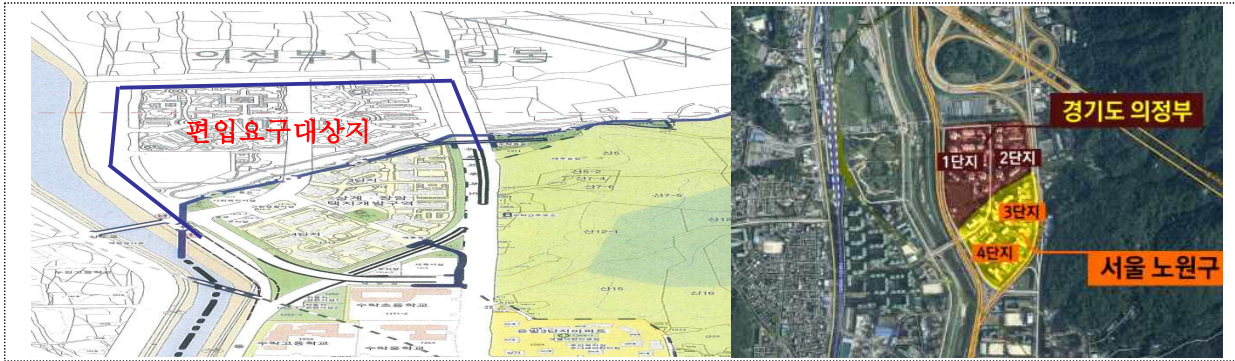
### 본 협약의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 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 서울시 노원구(67,420㎡) → 의정부시 장암동(60,500㎡)
  - ②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변경  
: 관련법에 따라 상호협력
  - ③ ①, ②연계 '의정부시 주민편의시설건립 지원'  
※ 의정부시 요구 상생발전지원금 규모 500억 원(서울시 350억원, 의정부시 150억 원)  
※ 지원시기: GB해제 결정 고시후 30일 이내,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30일 이내,, 착공후 30일 이내
  - ④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위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서울시 지분 매각  
※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9,747㎡)의 서울시 지분(5,855㎡)을 의정부시로 매각
- ※ 귀책사유 : 협약체결 이후
-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제공된 지급금(이자 포함) 반환
  - 서울시.노원구 귀책사유 시 : 기 지급금 의정부시 귀속

○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협약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기본협약에서 정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변경<sup>4)</sup>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음.

4)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서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수렴,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붙임-2 참고)

<편입요구(의정부시→서울시) 대상지 위치도>



“지원사항(협약안 제3조 및 제4조) 관련 지원근거 및 적정성”

○ 지원사항은 의정부시의 주민편의시설 조성 지원과 서울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5,855㎡)를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사항으로<sup>5)</sup> 요약되며, 이 중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되게 됨.

-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금액은 500억 원(서울시 350억 원, 노원구 150억 원)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30%), 실시계획인가 고시(20%), 착공시(50%)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절차이행 후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21.8.20,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지원 주체는 사업주체(서울시, 노원구 등) 또는 사업시행자이나 사업시행자를 서울시 또는 SH공사로 할 것인지는 유동적인 가운데, 사업일정상 서울시가 사업시행(예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5) 의정부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9,747㎡)에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검토 중임.

시설(면허시험장)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예정지 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 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법”) 제27조제1항6)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 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에 해 당되기 때문임.<sup>7)</sup>

- 창동 바이오메디칼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일정 부분 의정부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 단됨. 특히, 창동·상계 일대는 서울시 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중심 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봉면허시험장·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바이 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지 자체 간의 공조는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또한, 교통·환경·산업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정책적·사업 적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간의 협약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서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전지 인센티브 지원이 도시재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 도 5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이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활용 할 계획이기 때문으로 이해됨.

---

6) 도시재생법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7)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20.11.12) : 도시재생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이전예정지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 비용은 「도시재생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함.

- 지원금액 외에도 총 추정가격이 약 964억 원(매입비 364억 원, 조성비 6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부지 매입비와 조성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면허시험장을 조성한 후,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경찰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겠으나, 추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지시 지급금의 결정 및 지급”(협약안 제12조) 관련

- 협약안 제12조에서는 협약체결 이후 정책변화 등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의 배상 및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통상적인 계약과 달리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만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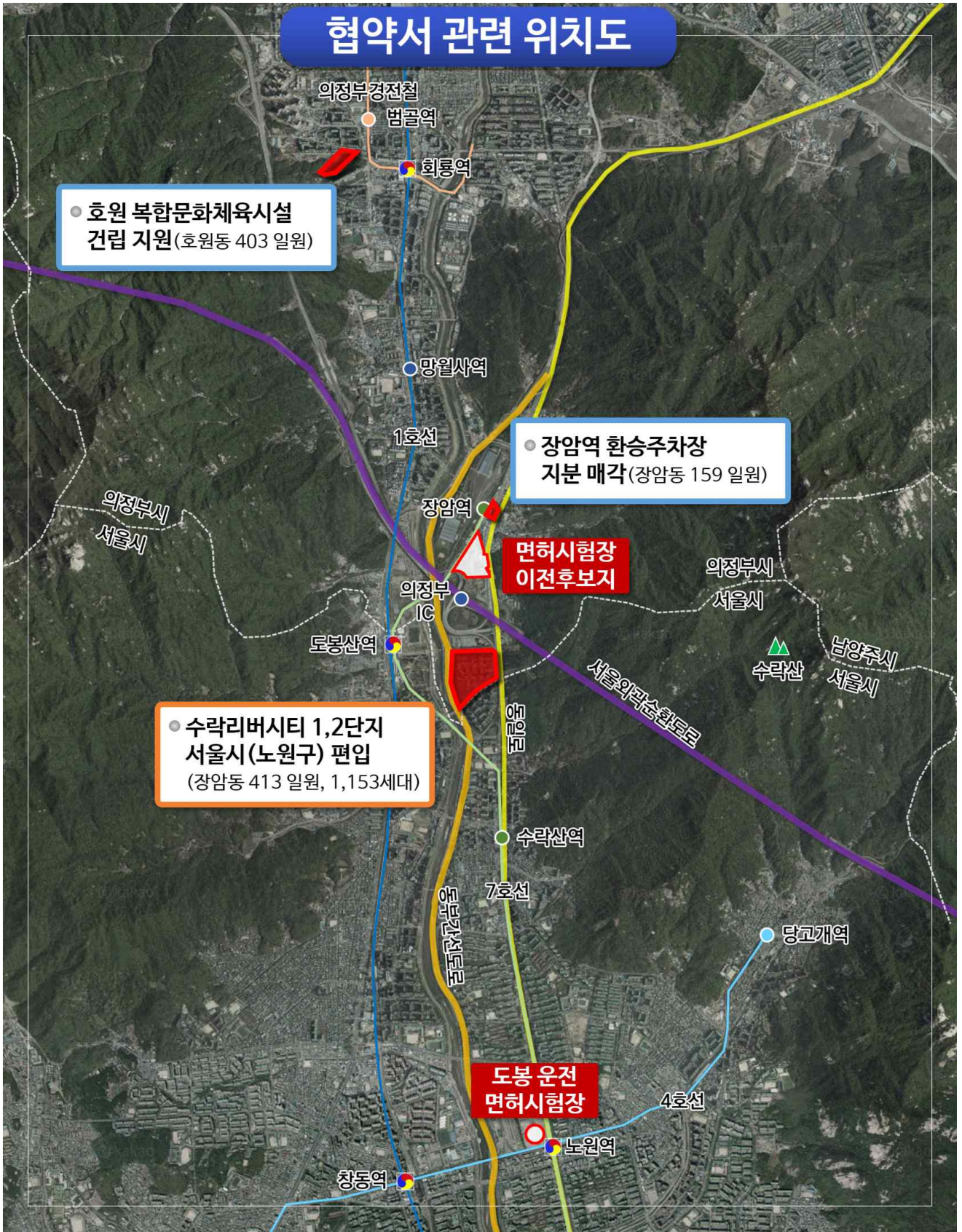
### □ 종합

- 창동 바이오메디칼 조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지역경제활성화, 향후 서울시 동북권의 위상강화 등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금액 등에 관한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협약안이 큰 틀에서는 지자체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 확정적 상태이므로, 변경시 진행 결과 보고와 수정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지원금액과 조성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nga@seoul.go.kr



【붙임-1】 협약서 관련 위치도 (자료: 균형발전본부)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예정지 현황 >

- 위치 :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 면적 : 60,500  $m^2$  (18,340평)
- 토지소유현황 : 사유지(81.9%), 국유지(17.5%)  
시유지(0.6%)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붙임-2】 행정구역 조정 근거 및 절차

### □ 행정구역 조정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제2항
- 행정구역 실무편람
  - ⇒ 조정기준 :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

### □ 행정구역 조정 절차

